

「2026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「2026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1일
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사업개요

- ☐ 사업명 : 2026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
- ☐ 사업목적 : 소상공인 상품에 적합한 홍보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·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과 자생력 강화
- ☐ 지원대상 :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을 제공하는 소상공인
 - * 과거에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- ☐ 사업규모 : 연간 총 1,400개사
 - * 사업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- ☐ 지원내용 : 제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지원
 - * 세부 지원 내용은 6. 세부 사업내용 참고
- ☐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- ☐ 지원 대상·상품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

<지원 제외 대상>
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<붙임> 참조
휴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대표자(소상공인)의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	○ 대표자(소상공인)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지원제외 상품	○ 해외 수입상품,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* 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

3

신청 및 접수

- ☐ 신청 기간 : '26. 7. 21.(화) ~ 8. 5.(수)

- ☐ 모집 규모 : 500개사 내외

* 선정 규모 달성 시, 조기 마감 가능하며, 1·2차 모집 소상공인 중 자부담 미납,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- ☐ 신청 방법

- (사업신청) 판판대로(www.fanfandaero.kr) 회원가입 후, 2026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신청
- (제출서류)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상공인확인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
<제출 서류 종류>

구 분		내 용	비 고
①	사업자등록 증명원	·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국세청 홈택스
②	소상공인 확인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
③	국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국세청 홈택스
④	지방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정부24
⑤	OEM증명서	·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(해외ODM 불인정)	해당 시 제출

*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(업로드)하며, 온라인 사업 신청 시,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(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) 제출 불필요

** 단,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
(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)

**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7.21일이면 유효기간이 7.2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<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>

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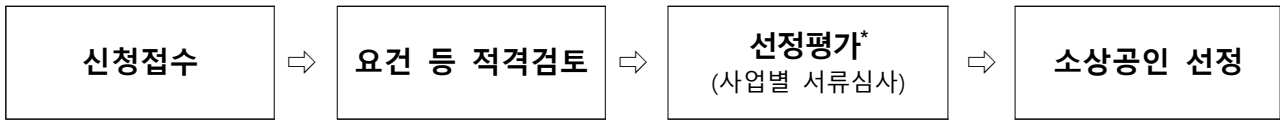
‘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’만 인정

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- ‘소기업(소상공인)’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 접속
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-6508

□ 선정 절차



* 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
**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

***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

□ 선정평가 기준 : 6. 세부 사업내용 참고

□ 우대사항

○ 가점부여 :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	해당 시 +5점
② '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진출 소상공인	
③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	
④ '23~'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체부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* 한국관광공사 주최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⑤ '25년 우수 특구(탁월·우수 등급)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	
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(coop.go.kr)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	
⑦ '23~'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해당 시 +3점

*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

주의 사항 : 8개 사업 대상

-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판매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8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
- **사업별 단가 합산 연간 총 6백만원 한도 내 선정 지원**이 가능하므로, 신청 시 개별 사업의 단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※ 예시 : 1·2차에 '상세페이지'와 '온라인쇼핑몰'에 선정된 경우

* 지원 한도(6,000,000원) - 상세페이지(1,602,000원) - 온라인쇼핑몰(1,800,000원)
= 잔여 한도 2,598,000원 → 잔여 한도를 초과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참여 불가

세부 사업명	정부지원금	자부담 비율	지원한도
① 상품 개선	2,385,000원	10%	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(1개사 당)
② 상세페이지 제작	1,602,000원		
③ 콘텐츠 제작	2,349,000원		
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1,800,000원	없음	
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3,501,000원	10%	
⑥ SNS 마케팅	2,475,000원		
⑦ 온라인 홍보	2,475,000원		
⑧ 물류 서비스	1,980,000원		

* 정부지원금(90%) 외에 자부담금(10%)과 부가가치세(10%)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

- 사업별 선정 일정에 따라 먼저 **선정된 사업들의 단가 합산 금액이 지원 한도(6백만원)를 초과**하는 경우, 초과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**'탈락'** 처리됨에 반드시 선정 순서를 참조 하시고 신청 사업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.

★ **선정 순서** : 물류 서비스 ▶ 온라인쇼핑몰 ▶ 라이브커머스 ▶ 상품개선 ▶ 상세페이지 ▶ 콘텐츠 제작 ▶ SNS 마케팅 ▶ 온라인 홍보

※ 예시 : (8/1) 물류 서비스 → (8/2) 온라인쇼핑몰 → (8/3) 상품개선 순으로 평가 시, 앞선 '물류 서비스', '온라인쇼핑몰' 모두 선정된 경우, 상품개선은 **'자동 탈락 처리'**

□ 지원 사업 운영방법

- (사업신청) 개별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따라, 8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단, 지원 한도(최대 6백만원) 내에서 선정
- (사업선정)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
 - * (지원한도)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(국비)를 합산하여 최대 **6백만원**을 초과할 수 없고,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
- (지원제한)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* 시,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,
 - * 예시) '26, '27, '28년 연속참여 시, '29년부터 지원 불가('26년부터 적용)

□ 유의사항

<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>

※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,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,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
*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(수행기관-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)

**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

※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, 4차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
-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,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* 제출 방식 :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,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, 기타 설문조사 등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의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(접수 반려, 탈락 등)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
-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(희망리턴패키지)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,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이후,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,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,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.
- 희망하는 수행기관의 배정 물량이 마감된 경우, 차순위 수행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.

□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□ 사업목적 : 소상공인 상품에 적합한 홍보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·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과 자생력 강화

□ 모집규모 : 500개사 내외

* 선정 규모 달성 시, 조기 마감 가능하며, 1·2차 모집 소상공인 중 자부담 미납,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 :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소상공인

* 과거에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
□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61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		부가가치세
정부가조금 (90%)	자부담금 (10%)		
2,610,000	2,349,000	261,000	261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□ 지원 내용

- (소구조사) 상품 카테고리별 다양한 영상 샘플을 제시하고, 참여 기업이 희망하는 영상 콘셉트, 문구 등을 파악하여 영상 기획안 제작
- (콘텐츠 제작)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
 - 참여기업과 협의한 기획안을 기반으로 촬영하며, 기획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요청 가능
- (패키지 제공) 홍보영상 촬영본을 기반으로 이미지컷, GIF, 클린본, 매체별 최적화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콘텐츠 패키지 제공

* 판판대로 신청상품(1종)에 대한 콘텐츠 제작

- (A/S 지원) 최종 영상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간 A/S 지원
 - * 원본파일 제공 /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- (AI 구독권) 동영상 생성 AI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

구분	세부내용
AI 활용	○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상품 홍보영상 제작·편집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성형AI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및 온·오프라인 실습 프로그램 운영 * 수행기관에 따라 지원 AI 프로그램 유형, 제공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행기관별 지원 내용을 확인 후 선택 요망

- (실습 프로그램) 동영상 생성형 AI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콘텐츠 제작 실습 프로그램 운영
 -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, 실습 프로그램 운영 일자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녹화본 등 공유 예정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최대 35점)	온라인판매(스마트스토어, 입점몰 등), SNS 채널 등 보유 및 콘텐츠 활용 적합성	35~31	30~26	25~21	20~16	15
상품 경쟁력 (최대 30점)	흥미 유발 요소, 심의 적합, 트렌드 등 상품에 대한 콘텐츠 구현 적합성, 경쟁력	30~27	26~23	22~19	18~15	14
사업 참여 역량 (최대 20점)	상품 설명 작성 충실 등 참여 의지 및 적극성	20~18	17~15	14~12	11~9	8
발전 가능성 (최대 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~13	12~10	9~7	6~4	3
가점 (최대 5점)	우대사항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붙임
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 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